

예산총칙

2008년도 본예산

제 1 조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 · 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58,675,478	7,760,264
일반회계	229,987,553	6,899,627
일반회계	229,987,553	6,899,627
기타특별회계	3,907,232	117,217
장기미집행	800,000	24,000
수질개선	491,073	14,732
주택사업	485,175	14,555
의료급여기금운영	951,460	28,544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92,694	2,781
공영개발사업	389,814	11,694
농공지구조성사업	552,016	16,560
기반시설	145,000	4,350
공기업특별회계	24,780,693	743,421
상수도공기업	11,377,288	341,319
하수도공기업	13,403,405	402,102

제 2 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 행위 사업은 별첨 "채무부담 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529,836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3,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